

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 심사결과보고

1999. 12.21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1999년 12월 9일 (충청북도지사 제출)
- 나. 회부일자 : 1999년 12월 9일
- 다. 상정일자 : 1999년 12월 21일 (제168회 정기회 제6차교육사회위원회) 상정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여성회관장 최정자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지역여성들에게 능력개발의 기회를 확대하고,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충청북도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여성회관에서 수강·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(안 제2조)
- 교육수강과 시설사용을 신청할 때에는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(안 제3조)

- 교육수강료 : 교육수강 1월/1과목 10,000원

- 시설사용료 : 대강당 1회/2시간 50,000원
강의실 1회/2시간 20,000원
전통예절실 1회/2시간 30,000원

※ 가산금 : 매 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20% 가산

- 냉·난방비 : 대강당 1회 2시간 기준 30,000원
강의실·전통예절실 1회 2시간기준 20,000원

※ 가산금 : 매 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20% 가산

- 교육수강 및 시설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음 (안 제3조)
 - 수강 또는 사용개시일 전에는 10%를 공제한 금액
 - 수강 또는 사용개시일 후에는 해당월, 사용일을 공제한 금액
 - 수강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반환신청을 할 수 없음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강료 및 사용료 면제 규정 (안 제4조)
- 교육수강자 또는 시설사용자가 시설장비를 훼손, 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함 (안 제6조)

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김동윤)

충청북도여성회관 운영조례안을 검토한 결과, 충청북도 지역여성들에게 능력개발의 기회를 확대하고,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충청북도 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
안 제4조의 사용료·수강료의 면제규정은 면제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이를 감면규정으로 수정 및 구체적인 사유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안 제4조의 사용료·수강료의 면제규정은 면제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이를 감면규정으로 수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함.

제4조 (수강료·사용료 감면)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강료·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
2.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경우
3.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수강료·사용료의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감면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10. 첨 부 서 류

-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제안서식
(수정이유 및 주요골자)
-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본문
- 수정동의 조문대비표 (원안 : 수정동의)
-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 본문 (원안+수정동의)

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

제안년월일 : 1999년 12월 21일

제안자 : 이길하 의원

1. 수정이유

- 안 제4조의 사용료·수강료의 면제규정은 면제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이를 감면규정으로 수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

2. 주요골자

-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함.

제4조 (수강료·사용료 감면)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강료·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
2.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경우
3.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수강료·사용료의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감면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

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 (수강료·사용료 감면)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강료·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
2.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경우
3.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수강료·사용료의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감면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수정동의 신구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동 의
제4조(수강료·사용료의 면제) 관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또는 사용 료를 면제할 수 있다.	제4조 (수강료·사용료 감면)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때에는 수강료·사용료를 감 면할 수 있다.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 접 사용하는 경우 2.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.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 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강료·사용료의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감면액 등 기타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화,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여성 공동의 장인 충청북도여성회관(이하 “여성회관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강·사용허가) 여성회관을 수강·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회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조(수강료·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회관의 교육 수강과 시설 사용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수강료와 사용료를 신청서 접수시 납부하여야 한다.

②교육 수강자 및 시설 사용자의 사정으로 수강·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강·사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을 할 수 있다.

1. 수강개시일 또는 사용개시일 전에 수강·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한 경우의 수강·사용료는 10%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
2. 수강개시일 또는 사용개시일 이후에 수강·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한 경우의 수강료는 해당월을 공제한 잔여월의 수강료를, 사용료는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반환

③수강기간 또는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는 수강료·사용료의 반환 신청을 할 수 없다.

제4조 (수강료·사용료 감면)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강료·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
2.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경우
3.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수강료·사용료의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감면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수강·사용허가의 취소)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·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.

1. 전염병등의 질병이 있는 자
2. 공공질서를 해하는 자
3. 수강·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는 자

제6조(시설변상) ①교육수강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.

1.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 하였을때
2. 기타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때

②제1항의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, 그 기준은 피해 사실이 발견된 때의 시가로 한다.

③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장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,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징수를 할 수 있다.

제7조(위탁교육) ①관장은 법인, 단체 및 개인이 위탁교육을 신청할 때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교육 신청자가 부담을 하여야 한다.

제8조(강사초빙 및 강사수당) ①관장은 교육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